

건설엔지니어링업 []휴업 []폐업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4일
신고인	상호 또는 법인명	등록번호	
	소재지	전화번호	
	성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전문분야 종합: [] 종합 설계·사업관리: [] 일반 [] 설계등용역 (□설계등용역 일반*, □측량, □수로조사) [] 건설사업관리 *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: [] 계획·조사·설계 포함, [] 계획·조사·설계 제외 품질검사: [] 일반 [] 토목 [] 건축 [] 특수* * 품질검사(특수) 세부분야 선택 [] 골재 [] 레디믹스트콘크리트 [] 아스팔트콘크리트 [] 철강재 [] 섬유 [] 용접(방사선비파괴검사) [] 용접(초음파비파괴검사) [] 용접(자기비파괴검사) [] 용접(침투비파괴검사) [] 말뚝재하		
신고내용	휴업 예정기간	폐업일	
부터까지(년 월) 휴업·폐업 사유		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휴업·폐업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
		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

처리절차

